

2019년도 경인지방우정청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9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시험일시: 2019. 10. 19.(토) 10:00 ~ 11:00

○ 입실시간: 09:20 ※ 08:00 이후 시험실 개방

2. 지역별 시험장소

구 분	인천	수원	의정부
장 소	4개	7개	2개

※ 응시번호별 시험장소는 「우정9급(계리)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 일반사항 〉

- 가.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나. 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다.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8:00부터 시험실 개방)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 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표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http://kpost.jinhakapply.com>) → 응시표 출력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마.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는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불량 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간 중에 수정테이프 등을 빌리는 행위 금지(당해 시험 무효)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배탈, 수분 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사. 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통제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고,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 예고 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통신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일체의 통신 기기(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 계산기, 전자사전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가. 득점은 OCR스캐너 판독기 결과에 따라 산출하며,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이라고 표시)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기>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나.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며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7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9. 11. 19.(화)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gi>)와 원서접수 시스템(<http://kpost.jinhakapply.com>)에 게시합니다.

5. 가산점 비율 확인 및 표기 안내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9. 10. 18.)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종류 및 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 확인

다. 의사상자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1044-202-3258)에 확인